

- (재)달서문화재단 정관 변경 협의사항 보고 -

# 제 안 설 명 서

2025. 11. .



대구광역시 달서구

<http://www.dalseo.daegu.kr>

[문화관광과]

# 제안 설명서

보고자: 문화관광과장

재단법인 달서문화재단 정관 변경 협의사항 보고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 우리구의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재)달서문화재단의 정관 변경과 관련하여 정관 변경 협의사항을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 드립니다.

이번 (재)달서문화재단과의 정관 변경 협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재)달서문화재단은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임원) 및 제8조(임원의 직무) 개정(2025. 10. 1. 자)에 따라, (재)달서문화재단 정관 제6조, 제8조, 제11조, 제14조, 제15조, 제30조의 단서 중 현재 ‘상임이사’ 를 ‘대표이사’ 로 직명 변경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재)달서문화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결산) 조항 개정(2019. 12. 3. 자)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결산서의 제출)

개정(2025. 10. 1. 字)에 따라 (재)달서문화재단 정관 제27조(결산서 등의 제출)의 단서 중 현재 ‘4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를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과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로 개정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위 내용으로 2025년 10월 1일 (재)달서문화재단으로부터 정관 변경에 대한 사전의견 조희를 요청받았으며, 관련 규정을 검토 후 2025년 10월 10일 정관 변경에 따른 사전 의견 수렴에 대하여 ‘의견없음’ 을 회시하여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 우리구와 (재)달서문화재단 간의 정관 변경에 대한 협의완료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달서문화재단에서 市 소관부서에 2025년 10월 13일 정관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으며, 2025년 10월 15일 市 소관부서로부터 정관 변경 허가 승인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재)달서문화재단 정관 변경 협의사항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재)달서문화재단 정관 변경 협의사항 보고

의안 번호	00925127
----------	----------

제출일자: 2025. 11. 14.

제출자: 달서구청장  
(문화관광과장)

## 1. 제안이유

- 우리구의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재)달서문화재단의 정관 변경과 관련하여 정관 변경 협의 사항을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 보고함.

## 2. 주요내용

### 가. 정관변경 내용

- 변경대상: (재)달서문화재단 정관 제6조, 제8조, 제11조, 제14조, 제15조, 제27조, 제30조
- 변경사유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2019. 12. 3. 字)
  -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2025. 10. 1. 字)에 따른 정합성 확보

### 나. 협의사항

- 협의근거: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 협의사항: 재단의 ‘상임이사’ 직명을 ‘대표이사’ 로 변경하고 재단의 결산서 제출시기 및 제출처를 ‘매년 4월말까지 구청장’ 에서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구청장과 구의회’ 로 변경함에 따른 정관변경 의견제출
- 협의결과: 의견없음

# 정관 변경 신 · 구 조문 비교표

현 행	개 정 안
<p><b>제6조(임원)</b></p> <p>① &lt;생략&gt;</p> <p>1. &lt;생략&gt;</p> <p>2. <u>상임이사</u> 1명</p> <p>3. 이사 15명 이내(이사장 및 <u>상임이사</u>를 포함한다)</p> <p>4. &lt;생략&gt;</p> <p>② <u>상임이사</u>를 제외한 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p> <p><b>제8조(상임이사)</b></p> <p>① <u>상임이사</u>는 문화전반에 대한 전문성과 경영능력을 갖춘 자를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p> <p>② &lt;생략&gt;</p> <p>③ <u>상임이사</u>는 재단의 재정과 사무를 통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다만 <u>상임이사</u>가 부득이한 사정 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당연직 이사 중 소관부서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b>제11조(임원의 임기)</b></p> <p>① 선임직 이사(<u>상임이사</u>를 포함한다)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2년 이내 연장할 수 있다.</p> <p>② ~③&lt;생략&gt;</p> <p><b>제14조(임·직원의 겸직제한)</b></p> <p>재단의 <u>상임이사</u>와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b>제6조(임원)</b></p> <p>① &lt;현행과 같음&gt;</p> <p>1. &lt;현행과 같음&gt;</p> <p>2. <u>대표이사</u> 1명</p> <p>3. -----(<u>이사장</u> 및 <u>대표이사</u> -----)</p> <p>4. &lt;현행과 같음&gt;</p> <p>② <u>대표이사</u>-----.</p> <p><b>제8조(대표이사)</b></p> <p>① <u>대표이사</u>----- -----.</p> <p>② &lt;생략&gt;</p> <p>③ <u>대표이사</u>----- -----, 다만 <u>대표이사</u>----- -----.</p> <p><b>제11조(임원의 임기)</b></p> <p>① -----(<u>대표이사</u>-----) -----.</p> <p>② ~③&lt;현행과 같음&gt;</p> <p><b>제14조(임·직원의 겸직제한)</b></p> <p>재단의 <u>대표이사</u>----- ----- -----.</p>

현행	개정안
<p><b>제15조(설치 및 구성)</b></p> <p>① 생략</p> <p>② 이사회는 이사장, <u>상임이사</u> 및 <u>이사로</u> 구성한다.</p> <p><b>제27조(결산서 등의 제출)</b></p> <p>① <u>재단은 매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아 매년 4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p>② &lt;생략&gt;</p> <p><b>제30조(임원의 보수)</b></p> <p><u>상임이사를 제외한 재단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임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에 의한 수당과 여비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u></p>	<p><b>제15조(설치 및 구성)</b></p> <p>① &lt;현행과 같음&gt;</p> <p>② _____, <b>대표이사</b> _____.</p> <p><b>제27조(결산서 등의 제출)</b></p> <p>① <u>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자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구청장과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u></p> <p>② &lt;생략&gt;</p> <p><b>제30조(임원의 보수)</b></p> <p><b>대표이사</b> _____  _____  _____.</p>

## 【 관련 법령 】

### □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정관변경의 허가신청) 「민법」 제42조제2항·동법 제45조제3항 또는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한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계되는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결산) 출자·출연 기관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산총액, 부채규모, 종업원수, 수익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출자·출연기관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임한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결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정관) 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협의사항을 지체없이 달서구의회(이하 “구의회” 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재단의 이사장은 구청장으로 한다.

③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하고, 당연직 이사는 구 소관국장으로서 하며, 선임직 이사는 문화예술에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으로 재단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이사장이 위촉한다.

④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대표이사는 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겸비한 사람으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

⑤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대표이사는 재단의 재정과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회계·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5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매년 2월말까지 구청장과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